

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1-111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입주이후 보육시설이 전무한 대단지 공동주택 내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고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: (가칭) 구립 현대홈타운어린이집 운영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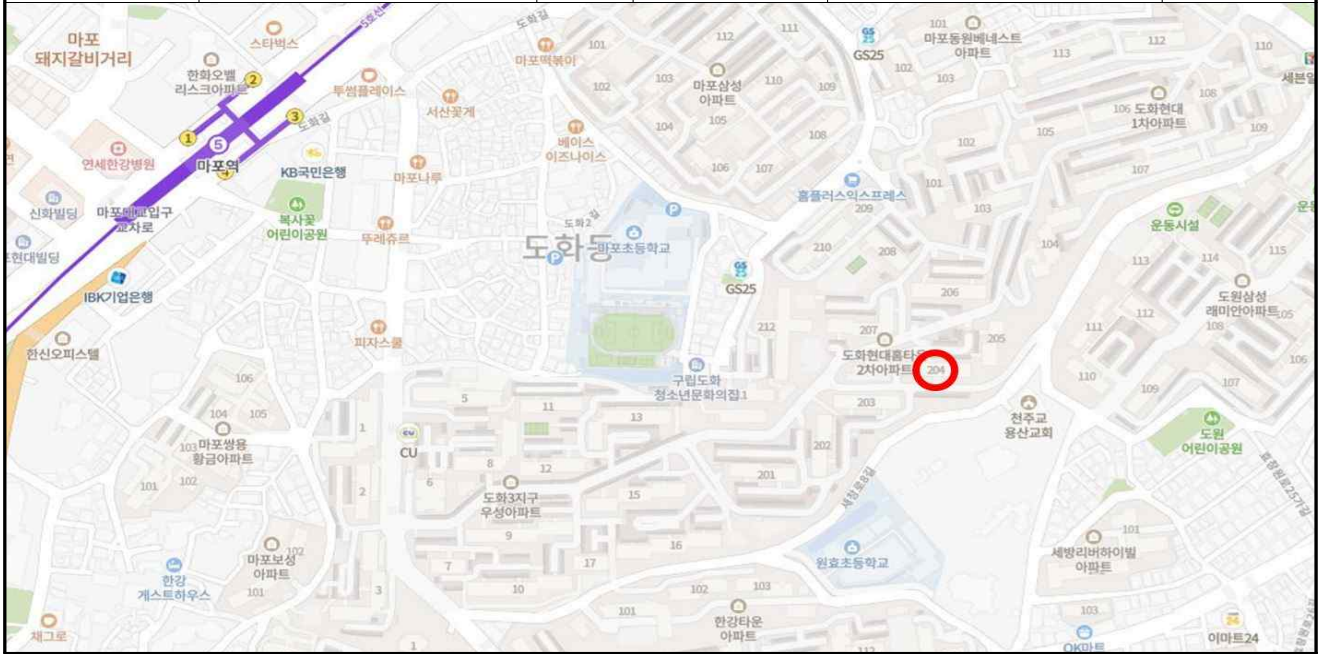
- 추진근거: 영유아보육법 제2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,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
확충 추진계획
- 필 요 성: 현대홈타운아파트는 2000.3월 입주 이후 21년 동안 단지 내
어린이집이 전혀 없었던 바 높은 보육수요 대응 및 보육사각
지대 해소를 위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함에 있어서 보육에
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
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
보육사업의 전문성을 확보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: 구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○ 위탁시설 현황

시설명	위치	정원	규모	소요예산(천원)	개원예정일
(가칭) 현대홈타운	새창로8길 72, 현대홈타운 204-101	20	113.25㎡	1,805,722 - 국비 154,904(8.6%) - 시비 845,096(46.8%) - 기금 742,722(41.1%) - 구비 63,000(3.5%)	'22.5.1.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개원일로부터 5년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

사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
-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함에 있어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, 제24조의 2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 ~ 제22조

나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○ 추진일정 (그간의 경과 포함)

- '21. 07. 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(매입가 적정 승인)
- '21. 10. 서울시 확충심사위원회 (승인)
- '21. 11. 구의회 위탁운영 동의
- '22. 02. 보육정책위원회 심의(위탁운영체 선정)
- '22. 03. 구립어린이집 위·수탁 계약체결
- '22. 05. 구립어린이집 개원

〈영유아보육법〉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-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 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 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
 3. 「주택법」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
〈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〉

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
-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,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4조의2(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)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.

〈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〉

제20조(위탁계약 등)

-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-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,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,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로 지정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,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, 구립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21조(수탁자 모집)

-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다.

제22조(위탁기간)

- 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단,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.